트루엘 TRUEL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조합원 청산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25일,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청약자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주택형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25)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신청자(특별공급 및 가점제,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춘천시 거주 신청자가 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강원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2017.9.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25)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로서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당첨자에 대하여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경쟁이 있으면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건축과 – 44327호(2017.09.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09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12개동 총 1,123세대[조합 548세대, 보류지 6세대, 일반분양 569세대中 일반분양 41세대(조합원 청산세대 포함)
[특별공급 : 기관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4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포함]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구분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 계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민영주택	2017001159-01	59.9580	59.9580	22.5840	82.5420	31.8170	114.3590	32.3059	8	1	1	1	-	3	5	1
	2017001159-02	68.9890A	68.9890	23.4490	92.4380	36.6100	129.0480	36.1791	11	1	1	1	1	4	7	3
	2017001159-03	68.9400B	68.9400	25.1430	94.0830	36.5840	130.6670	36.8229	4	-	-	-	-	-	4	-
	2017001159-04	68.9460C	68.9460	23.2690	92.2150	36.5870	128.8020	36.0918	6	1	1	1	-	3	3	-
	2017001159-05	84.9550A	84.9550	27.3560	112.3110	45.0830	157.3940	43.9571	1	-	-	-	-	-	1	-
	2017001159-06	84.9890B	84.9890	29.1190	114.1080	45.1010	159.2090	44.6604	3	-	-	-	-	-	3	-
	2017001159-07	84.9950C	84.9950	27.2590	112.2540	45.1040	157.3580	43.9348	6	1	1	1	-	3	3	1
	2017001159-08	84.9960D	84.9960	30.0960	115.0920	45.1040	160.1960	45.0455	2	-	-	-	-	-	2	-
계									41	4	4	4	1	13	28	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타입)	구분	공급세대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건축비	대지비	합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2017.11.23	중도금 1회(30%) 2017.12.28	중도금 2회(30%) 2018.02.28	잔금 30% 입주지정일
59.9580	59	103동 5호, 106동 6호,7호 110동 6호, 112동 4호,5호	8	2층	1	149,363,050	30,136,950	179,500,000	10,000,000	7,950,000	53,850,000	53,850,000	53,850,000
				3층	3	153,363,050	30,136,950	183,500,000	10,000,000	8,350,000	55,050,000	55,050,000	55,050,000
				4층	1	157,363,050	30,136,950	187,500,000	10,000,000	8,7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기준층	3	162,863,050	30,136,950	193,000,000	10,000,000	9,3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68.9890A	68A	103동 1호, 104동 1호,2호, 106동 2호, 107동 2호,4호, 108동 2호,4호,109동 1호,2호	11	3층	5	167,202,190	32,697,810	199,900,000	10,000,000	9,99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4층	2	171,202,190	32,697,810	203,900,000	10,000,000	10,390,000	61,170,000	61,170,000	61,170,000
				기준층	4	176,702,190	32,697,810	209,400,000	10,000,000	10,94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8.9400B	68B	107동 5호,6호, 108동 6호	4	3층	1	167,624,115	32,775,885	200,400,000	10,000,000	10,040,000	60,120,000	60,120,000	60,120,000
				4층	1	171,624,115	32,775,885	204,400,000	10,000,000	10,44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기준층	2	177,124,115	32,775,885	209,900,000	10,000,000	10,99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8.9460C	68C	107동 7호, 109동 6호	6	3층	1	166,864,650	32,635,350	199,500,000	10,000,000	9,950,000	59,850,000	59,850,000	59,850,000
				4층	2	170,864,650	32,635,350	203,500,000	10,000,000	10,350,000	61,050,000	61,050,000	61,050,000
				기준층	3	176,364,650	32,635,350	209,000,000	10,000,000	10,9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84.9550A	84A	101동 2호	1	기준층	1	210,456,190	38,943,810	249,400,000	10,000,000	14,94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84.9890B	84B	102동 4호, 103동 4호, 109동 5호	3	3층	1	199,378,115	39,021,885	238,400,000	10,000,000	13,84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기준층	2	210,878,115	39,021,885	249,900,000	10,000,000	14,990,000	74,970,000	74,970,000	74,970,000
84.9950C	84C	101동 3호,6호,109동 3호, 111동 1호, 112동 1호	6	2층	1	193,534,265	38,865,735	232,400,000	10,000,000	13,240,000	69,720,000	69,720,000	69,720,000
				3층	1	198,534,265	38,865,735	237,400,000	10,000,000	13,740,000	71,220,000	71,220,000	71,220,000
				4층	1	203,534,265	38,865,735	242,400,000	10,000,000	14,240,000	72,720,000	72,720,000	72,720,000
				기준층	3	210,034,265	38,865,735	248,900,000	10,000,000	14,890,000	74,670,000	74,670,000	74,670,000
84.9960D	84D	104동 4호	2	기준층	2	215,603,675	39,896,325	255,500,000	10,000,000	15,5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580	68.9890A	68.9400B	68.9460C	84.9550A	84.9890B	84.9950C	84.9960D
주택홍보관 등 약식표기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09. 4. 1.)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현재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불가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되었으며, 현재 공사진행 상황 및 자재조달 등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계약체결을 해야 함.옵션계약 및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불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조세공과금 및 과세금액은 입주자가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므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 이전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납부를 하여야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불입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계약자는 준공후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관련기관 대출 조건에 의거하여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의거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대하여 할인율(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할인하며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사업주체란 정비사업조합, 시공사를 말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특별공급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분	접수일시	장소
특별공급	2017.10.11. (수) / 10:00~15:00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주택홍보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3층]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10.11. (수) / 17:00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제4절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부적격 당첨자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6조 제7호의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로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가입기간 및 청약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명단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자격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 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배우자로 한정한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처제, 처형 등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서약서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4. 계약체결일 : 2017.10.24(화) ~ 2017.10.26(목)[3일간 / 시간 : 10:00 ~ 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계
일반(기관추천)	1	1	-	1	-	-	1	-	4
다자녀 가구	1	1	-	1	-	-	1	-	4
신혼부부	1	1	-	1	-	-	1	-	4
노부모 부양	-	1	-	-	-	-	-	-	1
합계	3	4	-	3	-	-	3	-	1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4세대 / 전용면적85㎡이하 주택건설량 10%이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1	1	-	1	-	-	1	-	4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국가유공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추천기관(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 강원서부보훈지청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4세대 / 주택건설량 10%이내)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	1	-	-	1	-	4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65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4세대 / 전용면적85㎡이하 주택건설량 10%이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	1	-	1	-	-	1	-	4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녀 및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증명서(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 허위임신 ·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자료)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표 제목: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 고시))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순서대로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같은 세대주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한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1세대 / 주택건설량 3%이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68A	68B	68C	84A	84B	84C	84D	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	-	-	-	-	-	-	1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해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신청 구비서류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진단서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주택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진단서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주택홍보관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소득증빙 서류 참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세대원	접수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청약자),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특별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신혼부부 소득입증 증빙서류

해당자격		구비 사항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도서식)	주택홍보관 비치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세무서

■ 일반공급
1.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25)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25)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1인 1건만 신청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로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춘천시 거주 신청자가 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강원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3. 순위별 자격요건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민영주택	공통		• 85㎡ 이하 : 가점제 적용(40%), 추첨제 적용(60%)				• 발표일시 : 2017.10.19.(목) • 발표시간 : 10:00 • 확인방법 : 당사 주택홍보관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40% / 추첨제 60%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춘천시 / 강원도	2017.10.12(목)	• 접수 사이트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100%임		2017.10.13(금)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 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10: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4. 청약신청 접수 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주택홍보관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2) 일반 1, 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3) 일반공급
• 공통 : 유형,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춘천시 및 강원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며, 1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1순위 :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 추첨제.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관련,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총점(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당첨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 방법 : 거주개시일(국민은행기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을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지역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기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전입 시 당해 거주자격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40%	60%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가점제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관련,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만 30세미만 미혼자는 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산 점수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수의 인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를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 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인감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2순위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취급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7.10.20)이후 평일 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및 장소

환불대상	구분	신청금 납부 방법
2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됨.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단, 청약자 본인명의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과 2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자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특별공급 제외)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 함.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함. • 시공사 주택홍보관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시공사 주택홍보관에서 공개 추첨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춘천시 거주 신청자가 강원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강원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일반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가점 순위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 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순으로 선정, 경쟁이 없는 경우 추첨제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한 경우 차순위 접수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주택홍보관에 별도 공고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truel.co.kr/chuncheon)에 공개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7.10.19. ~ 2017.10.28. (10일간)	
전화(ARS)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9 ▶ 1 ▶ 3]	-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이용기간	2017.10.19. ~ 2017.10.28. (10일간)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10.19. 08:3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고,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7.10.24(화) ~ 2017.10.26(목) [3일간 /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주택홍보관[본 공고문 하단의 주택홍보관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홍보관 제출 납부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지정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 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내용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결과 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2.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사 항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 · 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시고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등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입주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당첨자로 관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만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계약관리(안내, 고지등)를 위해 계약체결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행정자치부 안내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 ·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인가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일 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예 : 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101501홍길동'이라고 기재]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KEB하나은행	181-890030-19104	후평제2아파트주택정비사업조합 외 1

※ 구. 외환은행 계좌(630-010088-028)와 동일 계좌임.

5.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도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대출 금융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중도금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먼저 대납하되,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입주 전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함.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대출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자의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예비당첨자에 대한 공급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예정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기간
59	12,000,000	1,500,000	10,500,000
68A	12,700,000	1,500,000	11,200,000
68B	12,500,000	1,500,000	11,000,000
68C	12,200,000	1,500,000	10,700,000
84A	14,000,000	1,500,000	12,500,000
84B	13,800,000	1,500,000	12,300,000
84C	14,200,000	1,500,000	12,700,000
84D	14,500,000	1,500,000	13,00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일괄 시공할 수 있음(2005.12.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대금에서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현재 공사진행상황 및 자재조달 등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확장은 반드시 계약체결을 해야함.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주택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함.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옵션계좌(발코니확장)	KEB하나은행	181-890030-18504	후평제2아파트주택정비사업조합 외 1

※ 구. 외환은행 계좌(630-010087-991)와 동일 계좌임.

■ 추가선택품목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마이너스 옵션 계약이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 2018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확인)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케이아이씨	(주)엔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359,775,000원	568,217,000원	715,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6,129,900,000	제 01222017-101-00037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2. 보증 사고의 내용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않음)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제1조 제4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에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3. 보증채무의 성립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해당기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함.
4.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12) 주채무자가 입주예정일까지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비 등)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아파트 하자보수는 주택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주택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주택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주택홍보관의 VR동영상은 주택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주택홍보관의 전시품목 안내 및 주택홍보관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주택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홍보관 및 모형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주택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있으니,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주택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품목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장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 등을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주택홍보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의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에 따라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은 춘천시에서 시업시행하여 진행되므로 당사업의 준공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건립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시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됨.
• 주택홍보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인계획인가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열람하시고 계약바람.

■ 발코니 확장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은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발코니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등) 계획시 골라오지 않았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여 드릴 때 필요 조정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확장형 세대와 비확장 세대의 구조는 다르게 공급이 됩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자협의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여 주요 구조부 등 손상,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통하여 개별시공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적 사업주체가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사 주택홍보관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사항
1. 공통사항 및 단지 외부여건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면적 변동 시 공급금액에 의해 정산처리될 수도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알선 또는 업체의 선정등을 하지 않으니 개별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상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출토, 국가정책 또는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의거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변경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은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결정에 따르며, 제반 관련된 사업주체에 위탁함.
• 본 아파트의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단지내부여건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주택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중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주변 환경 및 세대 상호간의 향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공공접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판매시설, 문주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는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진출입 경사로 등)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실시공시 주택홍보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면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구성,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우 · 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현장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모형 등의 각종 홍보물의 내용과 제반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변경에 대한 제반 권한을 사업주체에 위탁함.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 하자예방 ·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 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디자인 작업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저층부 석재마감이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 크기는 다소 축소 시공될 수 있음.
• 지붕의 재료, 형태 및 구조와 난간의 형태 및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택홍보관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한 것이며, 비확장형의 경우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의 구성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전에 분양상담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및 바닥패턴, 색상, 식재계획, 자연석쌓기, 옹벽 구간 등과 외부 시설물의 위치, 형태, 색상, 재질 등은 해당 관청의 협의(자문)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자전거보관소, 경비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 시공 및 설계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문고 등)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품목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하는 것임.
• 모형 및 카탈로그의 단지 인근에 표현된 공원, 도로,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계획 상태이거나, 이미지만 표현한 것으로서 최종 시공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시기이전에 준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 외의 레벨차이, 인접동, 인접세대 및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일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상담사 및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접도로에 위치한 일부 동에는 도로측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부출입구 경비실과 단지 내 근린상가의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할 수 있음.
• 아파트 계단실에는 고정창이 일부 설치되므로 환기에 다소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에는 장식물, 피뢰침,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됨.
• 단지내 지상주차장과 도로 주변은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빛의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 D.A, TOP LIGHT, 필로티 장식물, 저층부 몰딩, 저층 마감, 동별 출입구 장식물 등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마감은 석재와 일부 석재몰딩이 혼용되며 적용 부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CG 및 모형, 도면 등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공조부에는 시공상 작업통로를 위해 조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관련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실명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분양계약이후 인접도로의 선형 및 가감속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생길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되고 제공된 물품의 수량 및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전에 단지 내, 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생활환경, 조망,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및 단위세대, 마감재, 주택홍보관 관련사항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 세대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건립되는 건축물로 사업부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각 용도별로 공동으로 사용함.
• 구조개선 및 미관향상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시공 후 계약자에게 통보.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공공접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및 아파트 주차장 경사로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배치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104동, 106동 및 110동, 112동은 단지 주출입구 설치로 소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문주위치에 따른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등은 조경공사시 그 위치 및 크기, 형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미로티에는 운동공간, 휴게공간 및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피로티 상층세대는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중 골프연습장 및 휘트니스 센터 설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아파 장식물, 창틀모아 및 색), 외부색채, 사업관련 사인물,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심의 및 현장여건에 의해 모형 및 카타로그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서 전세대 아파트로의 진입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며, 지상주차가 일부 설치되어 있음.
• 101동 1,2,3,4,5,6호, 102동 3,4,5,6,7호 라인의 층수와 호수표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0동 후면에는 어린이놀이터, 수생비오톱, 유아놀이터등이 설치됨으로 입주자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로의 이삿짐 차량접근이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함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조경설계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조명형 브랜드 로고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방식은 현장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행위가 발생시 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처리후 입주자에게 통보예정임(실시공시 변경될수 있음)
• 112동 1호라인 측면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지가 접한 도로의 개설 및 기타 사업인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자가 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처리후 입주자에게 통보예정임.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세대의 상하좌우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의 설치등으로 인해 벽체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내부공간의 활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불법적인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특히, 대피공간은 화재나 비상상황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건의 적재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세탁기 출입문은 85센티미터로 일부 대형세탁기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바닥의 높이는 물빼짐 구배 설치로 인해 도면 및 견본주택과 본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 본시공시 창문의 열림방향 및 손잡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출입문은 목재도어보다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ABS 도어로 설치되며 목재도어와 본시공시 ABS도어로 인한 목재도어와 일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본시공시 자재의 특성에 따라 재료분리대 설치, 선홈통은 설치, 이음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15인승 화물, 장애인 겸용으로 설치되고, 화재시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하며, 피난계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외부에 설치되는 난간은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20미터 높이로 설치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선홈통, 드레인, 보일러, 에어컨 냉매배관, 환기시스템, 가스인입구 등의 위치, 개소, 크기등은 본시공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주택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재재 등은 촬영 보존)
• 주택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용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시공후 계약자에게 통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 전시품 및 공간확보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의 연출용 시공부분(디스플레이) 등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 속의 조작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전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어 위치 및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미확장세대와 상하좌우로 인접한 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비고
시행사	후평제2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97	140171-0003830	
시공사	일성건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80	110111-0234776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truel.co.kr/chuncheon
■ 주택홍보관 및 분양문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65, 3층 / 1544-181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홍보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됩니다.)

■ 시행 후평제2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일성건설(주)

문의 1544-1811